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청과동 3층 101호

홈페이지 <http://www.packer.or.kr>

(TEL. 3401-2870 / FAX. 3401-2874)

발행 : 회장 최병선

담당 : 사무총장 이광형

가락시장은 수입산 양배추 거래 즉각 중단하라!

도매시장 수입농산물, 국내농업 소멸시킨다!

□ 대아청과, 중국산 수입 양배추 경매 강행,

○ 지난 일요일 저녁(10/18)가락시장 대아청과 양배추 경매장에 중국산 수입 양배추 600박스가 (15kg/box) 반입되었고 13,700원/box 14,000원/box에 각각 경락되었다. 출하자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대아청과는 농안법 제38조 「수탁거부금지 조항」 위배를 내세워 경매를 강행하였다.

○ 올해 기후 이변으로 인해 양배추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자 그 틈을 비집고 이익에 눈먼 수입업자들이 양배추를 무차별하게 들여오고 있다. 전년 대비 8배(1~9월 기준, 약 2만4천톤)가 넘는 많은 물량이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목이 집중되는 가락시장을 피해 지방도매시장에만도 하루에 100톤이 넘는 물량이 거래되고 있다. 이는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적어도 농민을 보호해야 할 공영도매시장에서 각종 혜택을 받고 영업하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이러한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단편적 영리 추구는 해서는 안될 일인 것이다.

□ 도매시장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곳이다.

○ 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은 시장교섭에서 절대 약자인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여 도매법인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를 공영도매시장과 도매시장법인들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인공이며, 그 가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극한의 상황에서 피땀 흘려 수확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이다.

○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주요 목적은 농산물 거래를 통한 수익창출이 아닌 전국의 농업인들이 위탁한 농산물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신 판매를 해주는 데에 있으며 도매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농업인들이 마음 편히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 「수탁의 거부금지」악용하는 비양심적 수입업자들과 이익에 눈먼 중도매인, 무책임한 도매시장과 도매법인을 규탄한다!

○ 매년 피땀흘려 농사지은 무·배추·양배추 가격이 물류비용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생산자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사상 유례없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출하할 수 있는 물건이 얼마 없어 그나마 살아남은 것만이라도 잘 관리해 손실을 줄여보려 애쓰고 있는 상황에 이젠 당근은 물론 양배추까지 무차별 수입해서 농민을 두 번 죽이고 있다.

○ 올해도 양배추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 되자 수입업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양의 중국산 양배추를 가져와 시중에 유통시키고 농안법 제 38조 「수탁금지 거부 조항」을 악용하여 주위의 시선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을 표적 삼아 수입산 양배추를 상장시키고 중앙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도 상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 대아청과가 이번에 어떠한 리스크도 지지 않고 수입산 양배추를 반입하여 바로 상장한 것은 우리 생산자들을 보호하려는 어떠한 의지도 없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청과법인들에게만 부여한 사업 권한 즉, 독점 지위가 만들어준 결과물의 폐해인 것이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수탁 거부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운운하며 핑계 대는 것은 수백억 원의 돈을 주고 매입한 법인들이기에 농업에 대한 사명감도 없고 철학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한 핑계의 수단일 뿐, 조그마한 리스크라도 회피하려는 상투적인 말로 들릴 뿐이다.

○ 더군다나, 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들은 10년간 평균 33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생산자나 출하자들을 위한 투자는 거의 없었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은 농민들이 보내온 농산물로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한 재투자에는 인색하고 해마다 주주들의 이익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입산 농산물까지 취급해서 농민들의 보호는 커녕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농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 산지에서 생산자는 이상 기후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대아청과는 금년에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아청과가 농안법 제1조의 내용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과연 보호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 농식품부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수탁 거부금지 조항」 수정 등
도매시장 수입산 농산물 확산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 우리는 이러한 수입농산물이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상들의 법을 악용한 비양심적인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농안법 제 38조 「수탁거부 금지」 조항의 수입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며,
-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개설자와 도매법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의 수입산 농산물 유통 중단, 비양심적인 수입업자들과, 이와 결탁한 편법유통 중도매인의 퇴출을 요구한다.
- 농식품부와 공사는 머지 않은 국내 농업기반 소멸의 위기를 인식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처럼 되지 않도록 도매시장 수입농산물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출하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
- 끝으로 전국 산지유통인의 대표조직인 사단법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에서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향상 그리고 도매시장의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싸워 나가는 것은 물론 출하 거부도 불사할 것이다.

2020년 10월 20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회 장 최 병 선

